

광주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가단8974(본소), 2022가단54243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물품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김용표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현

변 론 종 결 2023. 4. 21.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93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5,168,3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반소]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산일을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부터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공사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그 대표이사인 C이 1994년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가공업 등을 해오다가 2016. 4. 25.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또는 그 전신인 D)는 2015년경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철판 원재료를 제공하면서 철판의 가공을 요청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철판에 레이저 가공작업 등을 수행하여 완성된 철강제품을 원고에게 반환하되, 그에 따른 가공비를 원고로부터 수령하는 방식의 거래(이하 ‘이 사건 철판가공거래’라 한다)를 계속해왔다.

다. 원고는 2015. 9. 30.부터 2022. 1. 31.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1,242.378톤의 철강재를 합계 2,210,184,184원에 매입하였고, 2020. 8. 25.부터 2020. 12. 25.까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174.444톤의 철강재를 합계 279,684,064원에 매입하였으며, 2017. 12. 31.부터 2020. 8. 31.까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하고, 앞서 E, F과 함께 지칭할 때는 ‘E 등’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609.987톤의 철강재를 합계 757,525,835원에 매입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합계 2,026.809톤의 철강재를 E 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22. 6. 7. 원고에게 ‘원고의 요구로 2021. 2. 1.부터 철구조물 소부재를 제작하여 2022. 3. 30.까지 원고에게 납품완료 하고 물품 잔금 28,933,630원이 남았으니, 2022. 6. 17.까지 잔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가공비 지급요청서’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6. 17. 피고에게 ‘원고가 2015. 4. 30.부터 2022. 4. 30.까지 피고에게 제공한 철판원재료 중량에서 피고가 가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한 완성품의 중량을 공제하면 그 차액만큼 절단잔재물이 발생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잔존물 반환요청서’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을1 내지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30.부터 2022. 1. 31.까지 E 등으로부터 합계 2,026.809톤의 철강재를 매입하여 그대로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1,867.709톤의 가공품을 반환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159.1톤(= 2,026.809톤 - 1,867.709톤)의 철강재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위 철강재의 톤당 시세인 122만 원을 적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4,102,000원(= 159.1톤 × 122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가공비 28,933,630원을 공제 또는 상계한 나머지 165,168,370원(= 194,102,000원 - 28,933,630원)의 범위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 받은 철판을 레이저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요적으로 발생하는 고철 손실을 5%로 합의하여 원고와 이 사건 철판가공거래를 해왔고, 원고와 주고받은 자재정산서(월 단위로 정산) 등에도 ‘자재로스 5%’가 명시되었으므로,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 외의 다른 업체들과도 마찬가지로 철판가공거래를 해왔는데, 완성품이 아닌 고철 잔존물을 돌려주거나 그 비용을 정산해준 적이 없다. 더욱이 원고가 E 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철강재 합계 2,026.809톤 전부가 피고에게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잔존 고철에 대해 원고가 매입한 철강재의 시세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의 가액을 산정한 방식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철판가공거래에 대해서는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재기일로부터 5년 전인 2017. 8. 19. 이전에 입고했다는 철강재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 단

(1)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철판가공거래를 하면서 피고에게 합계 2,026.809톤의 철강재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원고가 E 등으로부터 2015. 9. 30.부터 2022. 1. 31.까지 합계 2,026.809톤의 철강재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갑1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매입한 철강재의 수량을 의미할 뿐이므로, 위 철강재 전부가 피고에게 제공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고와 F 사이의 거래명세서(갑8)의 비교란에 'D'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F로부터 매입한 철강재 수량은 합계 174.444톤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철강재 수량의 약 8.6%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E 등으로부터 매입한 철강재 전부가 피고에게 제공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원고와 G 사이의 거래내역서(갑7)를 통해서는 원고가 G로부터 매입한 철강재 수량과 거래일시 등을 알 수 있을 뿐 위 철강재가 피고에게 실제로 얼마나 제공되었는지 등을 알기 어렵다(G과의 거래량도 그 비중이 약 30%에 불과하다). 달리 원고가 E 등으로부터 매입한 철강재 전부가 피고에게 제공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더욱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철판가공거래를 해오면서 월 단위로 원고가 제공한 철판의 수량과 실제로 가공에 사용된 수량 등을 정산한 내역을 기재한 '자재정산서(을2, 2020. 10. 31.부터 2022. 3. 31.까지)'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팩스로 제공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자재정산서에 '자재로스 5%'를 적용한 수량이 명시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철판가공거래는 약 5% 정도의 자재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위 자재정산서 자체에는 팩스 송수신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¹⁾ 위 자재정산서가 실제로 원고에게 송부되었는지, 언제 송부되었는지를 알기는 어렵지만, 피고가 원고와 유사한 철판가공거래를 해온 다른 업체(H)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재정산서를 팩스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자재정산서(을3)에는 팩스 송수신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도 앞서 본

자재정산서(을2)를 팩스로 송부했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원고 역시 위 철판가공거래에서는 약 5% 정도의 자재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정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15년 9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약 6년 4개월간 피고와 이 사건 철판가공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상거래를 해오는 동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철판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존 고철 등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자재 손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잔존물 반환요청서를 보낸 시점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공비 지급요청서를 송달받고 나서 약 10일 이후인 2022. 6. 17.이었고, 그 이전에 그러한 반환요청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철판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이나 자재 손실에 대해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와 위 철판가공거래를 계속해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소 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철판가공거래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 받은 철강재 잔존물 등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철판가공거래 과정에서 현재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가공비가 합계 28,933,630원이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가공비 28,933,6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는 위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산일을 ‘반소장 송달일’로 기재하고 있는데(2022. 10. 7.자 반소장 참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반소장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이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1일)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4. 결 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받아들이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영호

1) 팩스로 문서를 송부하는 경우 팩스를 보낸 사람의 용지에는 송부일시가 표시되지 않으나, 팩스를 받은 사람의 용지에는 팩스의 송부일시가 표시되는데, 피고는 팩스를 보낸 사람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자재정산서에는 송부일시가 표시될 수 없고, 원고는 이에 대해 부지로 다투고 있어 팩스 송부일시가 기재된 자재정산서가 변론에 현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